보건복지부 | 보도자료 | APEC 2025 KOREA

보도시점 2025. 10. 28.(화) 공모 실시(9:00) 이후 | 배포 2025. 10. 27.(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모집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6.3)을 대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실시(10.28~11.28)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28일(화)부터 11월 28일(금)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① 시범사업 내용 및 경과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에 시작**되어,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시범사업 참여 전·후 6개월 의료 이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미이용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 **의료기관 입원일수 감소** 등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

* ('23) 28개 시·군·구, 29개소 → ('24) 72개 시·군·구, 95개소 → ('25.10) 112개 시·군·구, 192개소

** 응급실 방문횟수 : 이용자 0.6회→0.4회 / 미이용자 0.5회→0.6회
의료기관 입원일수 : 이용자 6.6일→3.6일 / 미이용자 6.3일→8.5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효과 분석, 건강보험연구원)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을 대비하여, **통합돌봄제도 내 재가의료 인프라**로서 **재택의료센터를 더욱 확대하고자 한다.**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집에서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리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② 시범사업 참여 요건 >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에 해당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하여, 환자 건강·기능상태 및 주거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후 **케어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의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시범사업 주요 개선사항 >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도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신규로 도입**한다. 해당 모형에서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원-보건소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82개군) 또는 **공모 시작 시점**(2025.10.28) 기준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시·구 지역**이다. 보건소와 협업하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이어야 하며, **보건소와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인접 지역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수가는 의원에게 방문진료료, 보건소에게 재택의료기본료를 각각 지급한다. 다만, 의원은 방문진료 외 추가적인 사례관리에 대한 보상으로서 **협업 인센티브**(수급자당 월 20,000원)를 신설한다.

< 의원-보건소 협업형 >

■ (**제공인력**)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기관) **의사** + (보건소) **간호사·사회복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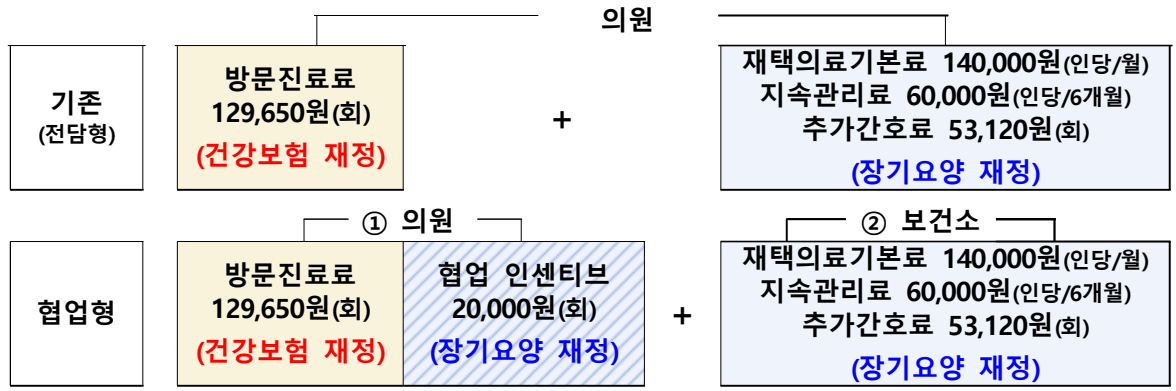
■ (**제공방법·기준**) 의사 방문진료(월1회), 간호사 방문간호(월 2회), 사회복지사 자원 연계 등 **기존 직종별 역할을 수행**

+ (**기관 간 협업**)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사례회의**를 통한 환자 상황 공유 필요

■ (**수가**) 기존 수가에서 **의원**은 **방문진료료**, **보건소**는 **재택의료기본료** 지급

- 의원은 방문진료 외 **추가적 사례관리에 대한 보상**으로 **협업 인센티브** 신설

⇨ 협업 인센티브(**장기요양보험**) : 수급자당 **20,000원**(1회 방문요건 충족시)



< ④ 시범사업 신청 방법 및 향후 일정 >

공모 신청은 **10월 28일(화)부터 11월 28일(금)까지**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서류 제출 방법 >

◇ 안내자료 및 서식 확인처 : 보건복지부 누리집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게시글

◇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개발부 재택의료팀 (033-736-1951~7)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내년 시행되는 **돌봄통합 제도 내에서 필수적인 재가의료 인프라**이다" 라고 하며, "**아직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라고 당부했다.

<붙임> 1.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개요
2.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미설치 지역 현황

담당 부서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	책임자	과 장	윤수현 (044-202-3380)
		담당자	사무관	한 샘 (044-202-3494)



붙임 1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거동이 불편한 재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의료 욕구 해소**를 위한 **의료·요양의 연계 체계 마련 필요**

* 재가급여 이용자의 53.5%가 건강 악화 시에도 재가생활 희망 (2022 장기요양실태조사)

□ 사업 개요 ※ **1차**('22.12.~'23.12.) / **2차**('24.1.~12.) / **3차**('25.1.~)

○ (수행기관) **의사(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으로 **담당팀**을 구성한 **의원급 의료기관**

* 단,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도 참여 가능

○ (대상자)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 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시설급여 이용 중인 노인 제외

○ (서비스 내용) **다학제 팀**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진료, 간호,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제공

*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사회복지사 지역사회 자원 연계

○ (급여비용) **건강보험 수가에,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더하여 지급

구 분	급 여 비 용
건강보험	▸ **방문진료료**(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요건 충족 시 지급) - 의사 1회 방문 시 **129,650원**(의원급), **137,920원**(지방의료원), **106,290원**(한의원), 본인부담 30% *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및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사용 중증환자 본인부담 15%
+	
장기요양 보험	▸ **재택의료기본료**[1], **추가간호료**[2], **지속관리료**[3] 1) 의사 1회, 간호사 2회 방문 충족 시 환자당 **월 14만 원**, 본인부담 無 2) 월 2회 초과하는 간호는 지역 내 방문간호기관 연계 원칙,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직접 수행 시 **회당 52,310원** 지급(월 3회까지 청구), 본인부담 15% 3) 6개월 이상 지속 관리 시 환자당 **6개월 단위로 6만 원** 지급, 본인부담 無

붙임 2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미설치 시·군·구 현황('25.10)

구분	시·도	시·군·구	구분	시·도	시·군·구	구분	시·도	시·군·구	구분	시·도	시·군·구
1	서울 특별시	구로구	31	경기도	동두천시	61	충청 남도	예산군	91	경상 북도	성주군
2		동작구	32		양주시	62		태안군	92		안동시
3		종로구	33		여주시	63	전북 특별 자치도	무주군	93		영덕군
4		중구	34		연천군	64		부안군	94		영양군
5	부산 광역시	강서구	35		오산시	65		순창군	95		영주시
6		기장군	36		하남시	66		임실군	96		영천시
7		사상구	37	강원 특별 자치도	고성군	67		장수군	97		예천군
8		서구	38		동해시	68		진안군	98		울릉군
9		영도구	39		삼척시	69	전라 남도	강진군	99		울진군
10		부산진구	40		속초시	70		고흥군	100		의성군
11		북구	41		양구군	71		곡성군	101		청도군
12		해운대구	42		양양군	72		광양시	102		청송군
13	대구 광역시	군위군	43		인제군	73		구례군	103		칠곡군
14		남구	44		정선군	74		나주시	104	경상 남도	거창군
15		달성군	45		철원군	75		목포시	105		고성군
16		동구	46		태백시	76		무안군	106		남해군
17	인천 광역시	강화군	47		홍천군	77		보성군	107		밀양시
18		옹진군	48		화천군	78		신안군	108		사천시
19		중구	49	충청 북도	괴산군	79		영광군	109		양산시
20	광주 광역시	동구	50		보은군	80		장성군	110		의령군
21	울산 광역시	남구	51		영동군	81		장흥군	111		창녕군
22		동구	52		옥천군	82		진도군	112		창원시
23		북구	53		음성군	83		함평군	113		통영시
24		울주군	54		증평군	84		해남군	114		함안군
25		중구	55		충주시	85		화순군	115		함양군
26	경기도	가평군	56	충청 남도	계룡시	86	경상 북도	고령군	116		합천군
27		과천시	57		금산군	87		김천시	117	제주 특별 자치도	서귀포시
28		광명시	58		보령시	88		문경시			
29		군포시	59		부여군	89		봉화군			
30		김포시	60		아산시	90		상주시			